

그리고 이러한 監査·調査를 위해서 사무보조를 시킬 수 있는데 事務局 職員이 監査·調査의 기능을 임하도록 법이 受任하고 있고 이번 條例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만 條例에서 委員이 아닌 事務局 職員이 직접 監査를 할 수 없도록 직접 監査條項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를 會議規則 第54條의 規定에 의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案 動議의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한 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실시
- 장소 : 의회 또는 피감사, 조사기관
- 활동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
- 책임 : 부당하게 처리한 의원은 의회에서 징계
- 위원회는 자료수집등 필요시 사무보조직원을 의장에게 요구 사무보조직원은 직접 감사, 조사할 수 없음

○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도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음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영 제17조의2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조사의 장소) 감사와 조사의 활동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제4조(감사·조사 활동) 감사, 조사의 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의원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한 때에는 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회의원은 감사·조사 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의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金寅東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마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수준높은 提案說明과 또 質疑를 통해서 모든 案件을 滿場一致로 通過시켜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韓正午議政係長이 해박한 專門知識을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도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19分 散會)

○出席委員

金寅東
孫允準
崔相燮
廉東秀
金箕英

林東奎
趙文晉
韓瑞奎
郭壽榮

金炯奎
朴善童
孟今龍
曹相彩